

SMOKE FREE 서울

간접흡연제로

2011년 12월 1일부터 **서울시 전체 중앙차로버스정류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3개월간의 계도기간 후
2012년 3월 1일부터 흡연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계별 금연구역 지정확대



1단계 '11. 3월 1일부터 금연광장 3개소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2단계 '11. 9월 1일부터 서울시 관리공원 20개소

간데메공원, 길동생태공원, 낙산공원, 남산공원, 독립공원,
보라매공원, 북서울꿈의숲공원, 서서울호수공원, 서울대공원,
서울숲공원, 시민의숲공원, 어린이대공원, 여의도공원, 용산공원,
월드컵공원, 응봉공원, 중랑캠핑숲, 창포원, 천호공원, 훈련원공원



3단계 '11. 12월 1일부터 중앙차로 버스정류장 298개소

3개월간의 계도기간 경과 후 과태료 부과